

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, 전문공사업자만 도급 받아야

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'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'는 전문공사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.

법제처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요청받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의 시공자격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.

법제처는 “건설법상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에 있어 ‘그 부대공사’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또는 시공함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”며 “이 경우 그 부대공사 즉 ‘전문공사의 부대공사’는 주된 전문공사의 종된 공사이거나 주된 전문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이므로 주된 부분에 따라 종합공사가 아닌 전문공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”이라고 밝혔다.

법제처는 또 “종합공사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도급 받으려면 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종합공사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인 경우에 한정된다”며 “그 외의 경우에는 전문공사업자만이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”고 덧붙였다.

법제처는 이와 관련 “건설법상 부대공사의 개념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더라도 ‘전문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는 복합공사로 보지 아니한다’고 규정한 사례가 있는 등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전문공사에 해당한다”고 부연했다. ●